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3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포구 구민상 수상 대상 및 시상 부분 변경(안 제9조)

- 구민상 수상 대상 거주 요건 명확화(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용감한 구민, 장한아버이 → 안전·환경, 교육 / 봉사 → 봉사·기부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6조)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4. 17.~5. 7.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거주”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감한 구민”을 “안전·환경”으로 하고, “장한아버이”를 “교육”으로 하며, “봉사”를 “봉사·기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의 제한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구민상)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용감한 구민, 장한아버이, 효행·선행, 봉사, 지역발전 관련 7개 부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9조(구민상) ① ----- ----- -----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② ----- ----- 안전·환경, 교육, ----- -----, 봉사·기부,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창의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신 설>

받은 자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표창 계획
으로 정하는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
상을 환수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조아라
연 락 처	02-3153-8215